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45-
----------	-----

제출년월일 : 2001. 11.

제 출 자 : 달 성 군



☐ 제안이유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ID 보급 등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자정12410-584(2000.7.26)호
- 시 정보12410-21048(2000.9.28)호
 -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송부

☐ 주요골자

-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함(안 제1조, 제3조)
-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여야 함(안 제4조)
-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운영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및 관리(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복사 관리하여야 함(안 제18조, 제19조)

☐ 조례안 : 붙임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전자우편”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정보화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소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직제에 의한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홈페이지운영요원”이라 함은 소관부서별 홈페이지운영자를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인터넷시스템은 정보화부서에서 구축한다.

②홈페이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군수와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자치단체의 국내·외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소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등록) ①자료를 생산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자료를 홈페이지에 수록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운영요원에게 의뢰하여 등록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에

자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관리는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 소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운영요원은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소관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업무담당자에게 답변을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

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우편 ID 관리 및 보급

제14조(전자우편 관리) ①전자우편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우편의 사용자수, 사용자별 용량은 시스템의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7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를 설정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